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6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이병훈·문정복·송갑석

양향자 • 윤영덕 • 이성만

이형석 • 전재수 • 조오섭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자동차의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급 한도액의 증액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절실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경형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 신설, 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2(경형자동차를 취득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자영업자(이하 이 조, 제111조의2제3항에서 "영세자영업자"라 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영세자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은"을 "환 급은 연간 30만원(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을 한도로"로, "한도액" 을 "한도액의 산정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를 취득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 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형자동차를 취득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영 <u><신 설></u>	제104조의32(경형자동차를 취득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자영업자(이하 이 조, 제11 1조의2제3항에서 "영세자영업자"라 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 한 특례) ①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 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 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 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 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 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1. 2. (생 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 2. (생략)
- ④ ~ ① (생 략)

<u>2026</u> <u></u>	
일	
	.
1 0 (처레크 카이)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급은 연간 30만원(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 만원)을 한도로---한도액의 산 정기간----.
- 1. 2. (현행과 같음)
- ④ ~ ⑫ (현행과 같음)